

1. 개정이유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감독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*됨에 따라 보안감독관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, 자격미달업체를 배제하고 적정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경비·검색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,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보안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리조선소의 최소 경비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* 법률 제17021호, 2020.2.18. 공포, 2021.2.19. 시행(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)

2. 주요내용

- 가. 항만시설 경비·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에서 보안사고가 잦은 부산항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
- 나.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,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수리조선소는 경비·검색인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2명이상 배치
- 다. 보안감독관 자격 기준(별표 8)으로서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, 철도안전감독관,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

가. 부산항의 경우 : 10억원 이상일 것

나. 그 밖의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: 5억원 이상일 것

제54조의 제목 “(합동점검 등)”을 “(보안감독관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1조제6항”을 “법 제41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·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4의 경비·검색 인력의 세부 기준란 제1호 중 “이상(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1명 이상)”을 “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상시 배치할 수 있다.

별표 4의 경비·검색 인력세부 기준란 제2호 및 경비·검색 인력세부 기준란 제3호를 각각 경비·검색 인력세부 기준란 제3호 및 경비·검색 인력세부 기준란 제4호로 하고,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했거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·검색인력 2명 이상을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8]

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(제54조제2항 관련)

1. 보안감독관(선박)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야 한다.
 - 가.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이 있을 것
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1) 법 제37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관으로서 선박보안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
 - 2)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라 기국 및 항만국통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
2. 보안감독관(항만시설)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야 한다.
 - 가.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이 있을 것
 - 나. 보안업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국가중요시설 보안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사람
 - 다. 보안업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국가중요시설 보안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사람
 - 라. 보안업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국가중요시설 보안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
 - 마.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써 국가중요시설 보안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바. 국가중요시설 보안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사.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(또는 내부보안심사자)로서 항만보안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아. 항만시설 보안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8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경비·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) 법 제31조제3항에서 "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</u> 3. (생략) 제54조(합동점검 등) <신설>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 <신설>	제38조(경비·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)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</u> 가. 부산항의 경우: 10억원 이상일 것 나. 그 밖의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: 5억원 이상일 것 3. (현행과 같음) 제54조(보안감독관 운영 등) ①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----- 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·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